

The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보내는 진정서

1. Information concerning the allegation

The Authors

Name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Contact

Name: Ms. Boram JANG,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ddress: 23 Boebwon-ro 4gil Daedeok Building 2f,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bjang@minbyun.or.kr

Name: Ms. Huisun KI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ddress: 16, Jahamunro 9-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jw@pspd.org



2. 사건의 경위

1. 대한민국의 경우 최고법원인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인사, 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요직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법관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법관들은 법관들에 대한 평정, 전보, 승진, 재임용 등 인사에 권한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사법행정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장은 대법관이 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요직을 거친 법관들만이 대부분 대법관이 되어왔다.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1. 9. 부터 2017. 9. 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 기간 동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판사들이 자신이 가진 막대한 사법행정권한을 남용하여 개별 법관을 사찰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개입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위 의혹에 대해 3차례 불충분한 내부조사만을 실시하였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개별사건 관계자들의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3. 법관 독립성 침해 사례

A.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 연구회 와해 시도

3. 사법농단 의혹은 2017. 2. 대법원장이 가진 광범위한 사법행정권한의 민주적 분배 등 사법부의 개혁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축소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4.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10월 발족된 법원 내 학술모임으로서, 인권과 소수자 문제, 사법개혁 문제 등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

동을 하고 있으며, 400여명의 판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은 유엔 인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을 연구하고 이를 국내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유엔 주최 행사에도 여러 차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¹⁾는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인사권, 예산배당, 사법행정 권한 등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독점을 비판하는 학술대회를 2017. 3.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5.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학술행사를 축소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시킬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2017. 2. 13. 연구회 ‘중복가입금지 조치’²⁾를 공지하여 국제인권법학회에 가입한 판사들을 탈퇴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B.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

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군부정권이었던 박정희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는 위헌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김 모 판사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자, 해당 판사에 대해 징계 방안을 검토했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사례가 없자 해외 사례까지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
7. 양승태 대법원은 진보적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코트넷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차 모 판사에 대해 재산관계 특이사항을 검토하게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바 있다.

1)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10월 발족된 법원 내 학술모임으로서, 인권과 소수자 문제, 사법개혁 문제 등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400여명의 판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음

2) 해당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법관은 하나의 연구회만 가입할 수 있고, 최초 가입한 연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구회에서 탈퇴하라는 내용이었음

C. 주요 인권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개입

8.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국사회 강정, 밀양 송전탑, 세월호 문제가 있었고 한국시민단체도 유엔에 문제제기 해왔으며,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과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방문했을 당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인권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권고내용을 최종보고서에 포함한 바 있다.
9. 이와 같은 인권침해사안들 가운데 적지 않은 것들이 1,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3심에서 패소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과도한 벌금, 형사처벌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3차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들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피해자들은 현재 재심을 요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4. 관련 법규 및 위반 사항

10. 법원행정처는 개별 소송 사건을 박근혜 정부와 거래대상으로 삼고 개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재판부 심증을 확인하여 청와대 등에 전달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대법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원 내 특정 연구회와 소모임의 형해화를 시도하고 법관 개인에 대하여 사법행정과 무관한 광범위한 사찰을 시행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법관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많은 수의 파일을 삭제하여 진실 은폐를 시도하였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과 행정처에서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저질러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1. 첫 번째, 이는 모든 사람이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1항³⁾

3)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및 세계인권선언 제10조⁴⁾ 및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⁵⁾ 위반이다. 특히 1985년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제1조, 제2조,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

1. 사법부의 독립은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고,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은 모든 정부 기관과 다른 기관의 의무이다.

2. 사법부는 사건을 특정한 목적이나 외부 집단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 압력, 권유, 위협 또는 개입 등 제한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나 구속 받지 않고, 법률과 사실에 입각하여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 재판의 절차에 있어 어떠한 부적절하거나, 간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결정은 수정(변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이 원칙이 사법적 재심사나, 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법원에서 내린 형을 감형하거나 감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2. 뿐만 아니라 법원 내 연구회와 소모임의 형해화 시도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사찰은 자유권규약 제19조⁶⁾ 및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제10조⁷⁾ 위반이다.

공정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 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4)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6)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7) Qualifications, selection and training

5.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 및 한계점

A.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진상조사 결과 (1차 진상조사)

13. 일선 판사들과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3. 24. 조사를 시작했다.
14. 진상조사위원회는 3주 후인 2017. 4. 18.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하는 등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였고, 시급성과 필요성이 없는 ‘중복가입금지 조치’는 부당한 제재조치로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은 컴퓨터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B. 추가조사의 요구 및 이에 대한 거부

15. 핵심증거인 컴퓨터 파일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시민단체, 일선 판사 등은 추가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 9. 22. 임기를 마칠 때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다.

C. 추가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2차 진상조사)

16. 양승태 대법원장은 1차조사후 재조사 요구를 거부한채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하여 추가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10. Persons selected for judicial office shall be individuals of integrity and ability with appropriate training or qualifications in law. Any method of judicial selection shall safeguard against judicial appointments for improper motives. In the selection of judges,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against a person on the grounds of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status, except that a requirement, that a candidate for judicial office must be a national of the country concerned, shall not be considered discriminatory.

어졌다. 대법원은 2017. 11. 3.에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정했고, 2017. 11. 13. 내부인사로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11. 15. 추가조사를 개시하였다.

17. 추가조사위원회는 2018. 1. 22.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다수 발견되었고, 특정 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까지 발견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8. 추가조사위원회는 인사나 검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 문서를 다수 발견하였다. 해당 문서에는 개별 판사의 정치적 성향,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가족관계, 개별 판사가 작성한 SNS 게시물 수집,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비판 여부 등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19. 추가조사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파일을 발견했다. 해당 문건은 당시 집권하고 있던 박근혜 정부의 대선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형사재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 2820 판결)에 관한 문서였다. 해당 문건에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 청와대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 법원 내외부의 인터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위 판결에 대해 개진한 의견을 기재되어 있었다.
20. 위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직접 행사한 임종현 전 차장 등의 컴퓨터 및 비밀번호가 설정된 760여개의 암호파일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

었다.

D. 특별조사단의 구성 및 활동 (3차 진상조사)

21. 대법원은 2018. 2. 12.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이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고 조사를 개시하였다.
22. 특별조사단은 2018. 2. 23. 1차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으며, 2018. 4. 11. 2차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파일 406개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문건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음. 특별조사단은 과거 정부의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법원과 달리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한 판사들의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의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23.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회의에서 의혹 관련 문건으로 총 410개의 파일을 추출하여 조사했으며, 법관 사찰 문건은 발견되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했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4. 위 조사결과에서는 특별조사단은 ① 법원행정처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입법추진 했던 상고법원 도입⁸⁾을 위하여 개별 사건을 거래 목적으로 삼아 청와대와 비밀리에 광범위한 교감을 시도한 사실, ②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개별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 ③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의 심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한 사실, ④ 법원행정처가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 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에 대해

8) 대법원의 사건 중 일부를 새로운 법원을 설치하여 처리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대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이었음

반대하는 법관들의 개인의 정치적 성향, 판결 성향, 재산 상태 등 사법행정과 무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시행한 사실, ⑥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인사모⁹⁾ 관련 검토”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의심이 있는 24,500개의 파일들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5. 특히 발견된 문건 중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¹⁰⁾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서는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는 점, 사법부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해 왔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즉 다수의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광범위한 사전교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26. 위와 같은 충격적인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법원행정처 및 그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논란이 있다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구체적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7. 나아가 조사결과의 공개도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대상인 내부 문건 410개 중 174개만을 일부 공개하였다. ‘(140505)세월호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141229)민변대응전

9)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의 약칭

10) 청와대를 의미

략’, '(150803)VIP보고서’ 등 특정 사건에 대한 개입, 특정 단체에 대한 탄압, 청와대와의 부적절한 교감이 의심되는 문건이 다수 있음에도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E. 대법원 자체조사의 한계

28. 이와 같이 대법원이 3차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이는 조사위원들이 내부 법관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 포렌직의 한계, 강제수사가 아닌 조사로 인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미실시 등 조사 자체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를 여러 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조치를 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6. 결론

29. 특별조사단은 문서의 내용의 전후 경과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양승태 등의 조사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행정 처로부터 인사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지도 못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려 하였다. 사안의 심각성이 알려진 후에도 대법원은 아직 문서 공개나 책임추궁, 근본적 해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책임 일체를 부정하고 있다.

30. 따라서 특별보고관에게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체제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관련 대한민국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1. 진상규명

- 대법원은 410개 문건을 완전한 형태로 공개할 것.

2. 책임자처벌

- 검찰은 빠른 시일내에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
- 대법원은 관련판사를 직무배제하고 철저히 징계할 것.

3. 피해회복

- 정부는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4. 재발방지

- 대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